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災害對策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5日(月) 午前1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 따른 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 따른 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12時 17分 開議)

○委員長 林東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會期中
災害對策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마쁘신 中에도 오늘 會議에 參席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會議는 聖水大橋 崩壞事故로 인하여 發生한 死傷者 補
償金を 支給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이 補償金支給條例案을
서울特別市議會에 提出하여 12月 1日 本會議 議決을 거쳐 우

리 委員會로 回附되었기에 條例案 檢討를 위하여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會議가 進行이 되도록 많은 協助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時 18分)

○委員長 林東奎;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保社環境局長은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保社環境局長 卓秉伍입니다.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서울市政의 發展을 위하여 連日 勞苦가 많으신 林東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聖水大橋 事故로 인한 死傷者에 대하여 國家賠償法에 規定된 損害賠償金 이외에 特別慰勞金을 支給하기 위한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을 提案드리게 되었습니다.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條例에서 死傷者는 1994年 10月 21日 聖水大橋 崩壞로 인한 死亡者와 負傷者로 限定하였으며, 補償對象者의 適格 與否와 補償金의 審議決定 및 그 支給에 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補償審議委員會를 構成, 運營토록 하였습니다.

特別慰勞金 支給은 死亡者에 대하여는 우리市가 遺族側과

長期間 協議過程을 거쳐 合意된 金額인 1人當 7,000萬원을 支給토록 하고, 負傷者에게는 追後 合意에 의하여 正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補償金 申請期間을 1995年 3月 30日로 하여 補償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補償金 支給請求는 原則적으로 補償金 決定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個月 이내에 하도록 하여 請求期間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本 條例의 制定은 地方自治法 第15條에서 정한 條例制定 規定과 같은 法 第132條에서 정한 經費支出 義務規定, 그리고 地方財政法 第30條 및 第49條에 根據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條例가 制定되어 聖水大橋 崩壞로 인한 死傷者와 그 家族이 하루빨리 生活에 安定을 찾고 市民和合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東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道路局長, 追加說明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局長 金震培; 道路局長 金震培입니다.

일찍 擔當局長으로서 여러 委員님들을 찾아 뵙지 못하고, 빠른 時間 內에 이렇게 委員會를 열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事案이 굉장히 時急하다 하는 것을 勘案하시어 이번 會期에 꼭 通過가 되도록 적극 協助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東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 있겠습니다. 專

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檢討意見 部分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總括部分입니다.

유례없는 聖水大橋 崩壞事故로 인한 被害死傷者에게 충분하고도 適正한 補償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方法과 節次上에 약간의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細部部分입니다.

同 條例案이 우리 災害對策特別委員會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적고, 特委의 構成은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10條에 "議會는 특정한 案件을 審査處理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議會의 議決로써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 規定을 고려하면 本 特委 構成에 있어서 本末이 顛倒된 瑕疵가 있었음을 먼저 指摘하고자 합니다.

同 條例案의 所管局이 道路局이므로 이는 道路局을 所管하는 委員會에서 處理함이 타당하고, 또한 崩壞事故의 原因提供者이며 建設·사후관리 責任이 道路局에 있음에 비춰봐도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聖水大橋 崩壞事故는 自然災害가 아니라 서울特別市の 管理責任이 있는 施設物에서 發生한 것이므로 國家賠償法 第1條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害賠償의 責任과 賠償節次를 規定한 것과, 또한 同法 第2條의 過失規定의 公務員 責任, 同法 第5條의 公共施設 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등을 각각 고려함에 있어 즉, 國家賠償法上의 賠償으로 서울市の 責任은 일단 終了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특별하고도 限時的인

條例를 制定할 필요성 與否도 우선 檢討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同 條例에 따른 特別補償金 支給이 法的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根據로 條例없이 豫備費로 支出할 수 있고, 또한 法的 타당성이 없다면 條例 根據의 意味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하며,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向後 이와 유사한 事故가 發生할 때마다 各기 다른 條例를 制定해야 한다면, 또 이를 議會가 매번 審議 議 決해야 한다면 이는 法的 효용성 면에서, 또한 法 經濟的 側 面에서 各기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條例 條項部門입니다. 條例案 第4條 補償審議委員會 構成 中 第5項의 幹事 規定에 社會課長, 道路施設課長 各 2 人을 두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聖水大橋 事故가 自然災 害가 아니고 道路局의 所管事項인 橋梁管理의 瑕疵로 發生한 것이므로 社會課長은 削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向後對策입니다.

地方財政法施行令 第32條에는 豫備費 支出條項 中 緊急災害 補助金은 豫備費로 支給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으므로 이를 準用하여 서울市長이 우선 先 執行하고 이후 議會의 豫備費 承認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報告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東奎; 수고하셨습니다.

權寧斌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斌 委員; 權寧斌입니다.

먼저 큰 事故로 인해서 收拾과 遺家族 補償問題에 勞苦가 많은 우리 關係公務員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自然災害가 아니고 人災로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우

리 모두 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特委에서 이 問題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疑問은 듭니다. 豫備費로 먼저 執行을 한 다음에 나중에 決算過程에서 이 豫備費 使用의 타당성에 대한 議會 協助를 얻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聖水大橋 崩壞事故가 施工不實과 管理不實, 두 가지 側面에서 責任이 있다고 본다면 그 中에서 우리 서울市가 관계되는 管理不實에 대한 責任은 이미 關係公務員들이 拘束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裁判이 進行이 되어 봐야 本人들의 過失 어떤 責任限界가 나오겠지만 本人들에게 過失이 있다면 역시 賠償金도 本人들에게 어느 部分만큼은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事案의 時急性과 遺家族의 立場을 고려할 적에 우리가 時間에 쫓겨서 이 問題를 신속히 處理해야 된다는 그런 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豫備費 使用을 先 執行하고 나중에 議會의 追認節次를 밟는 그런 것은 어떤 問題點이 있는지 우리 卓局長님 좀 答辯을 해 주세요.

○委員長 林東奎; 앞아서 말씀하시지요.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權寧斌 委員님께서 저희들 立場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말씀, 격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豫備費를 先 執行하고 후에 承認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豫備費를 執行을 할 경우에 法的으로 支給을 하는 根據基準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國家損害賠

償金 支給은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根據가 되어 있어서 바로 支給이 됩니다만 特別慰勞金은 國家賠償法 이외에 하나의 慰勞金으로 支給되기 때문에 慰勞金은 補償的인 性格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特別慰勞金 支給根據를 國家賠償法으로 準用할 수는 없다, 이것이 法務部하고 法制處의 意見이었습니다.

그래서 國家賠償法은 損害賠償金을 支給하는 것이 根據로 되고 特別慰勞金은 支給根據가 없다, 그럴 경우에 議會에서 制定하는 經費支出 및 豫算編成을 반드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支出原因行爲를 할 경우는, 豫備費를 쓸 경우는 반드시 法令·조례 및 規則이 정한 바에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豫算의 範圍 內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地方財政法 第49條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財政法 第49條第2項에 따라 豫備費를 支出할 때도 法令 및 條例·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條例를 制定하기 위해서 承認 要請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權寧斌 委員; 아울러서 지금 이러한 前例가 있는지 與否와, 또 이러한 것이 하나의 前例가 되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問題가 發生했을 경우에, 또다시 이러한 惡循環이 되풀이 됐을 경우에 따르는 問題點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事故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굳게 다짐을 하고, 이번 機會에 한해서 特別條例는 더 이상 저희 서울市에서 制定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幹部會議에서 決定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權寧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면 과

거에도 이러한 事例가 있었느냐 하는 問題를 저희들이 調査를 해 본 결과 84年 9월에 望遠洞 大洪水時 發生한 水災民에 대한 被害補償金을 支給을 하는 데에 있어서 水門管理 瑕疵로 인한 國家賠償法 支給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補償金을 일부 支給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支給根據가 없다 그래서 92年 2月 1日 서울特別市麻浦區望遠洞水災民補償金支給條例를 制定해서 承認을 받아서 施行을 했습니다. 이때 財源도 豫算科目은 水門管理 瑕疵가 있는 下水局, 治水 및 下水事業費 中 治水管理補償金 이름을 넣어서 支給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도 望遠洞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特別市 麻浦區를 條例上에 限定的이고 또 限時的으로 해서 補償金을 支給한 다음에 廢棄를 했음을 報告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類例한 事例가 있을 경우에 또 그때 그때마다 補償金條例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檢討를 해 본 결과 國家賠償法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서 賠償을 할 경우는 賠償金이 現實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國家賠償法 基準을 上向調整할 수 있도록, 現實化시켜 줄 수 있도록 法務部에 저희들이 正式 要請하기로 하고, 國家賠償法만 현실에 어느 정도 適應이 되면 앞으로 이러한 條例는 制定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幹部會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論議가 충분히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事例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斌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特委의 設立目的에 비추어

봤을 적에 條例 管轄權 問題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道路 管理不實에 의한 崩壞에 대한 궁극적인 主務 部署는 道路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災害이다 보니까 아마 保社環境局에서 처음부터 遺家族 補償問題에 계속 主務局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管轄權 問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專門委員도 特委 構成의 本末이 顛倒된 瑕疵가 좀 있다 이런 表現을 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事故가 났을 그 당시에 事故原因을 바로 確認을 하기가 어려운 時急性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特別市 災害對策本部를 바로 稼動을 시킴과 同時에 保社環境局長이 救護班長이고 道路局長이 復舊班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3日이 지난 다음에 거의 이 內容은 災害救護法에 따른 "旱害, 風害, 水害, 火災, 기타의 災害로 同一한 地域 內에서 多數의 罹災者가 發生하여 應急的인 救護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다" 하는 災害救護法 第2條의 項目에 의해서 이것은 自然災害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 幹部會議에서 다시 方針을 變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內容은 道路施設이기 때문에, 橋梁이기 때문에 公共施設物의 管理에 관한 瑕疵問題 또 補修責任, 또 앞으로 救護責任 등등 해서 專門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道路局에서 責任을 져야 될 그런 事案이다 이게 市長님 方針決定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道路局長은 業務上 매우 바쁘고, 또 제가 처음부터 이 業務를 擔當했기 때문에 결국은 幹部 立場에서 끝까지 이 業務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주는 立場으로 이렇게 이 자리

에 있습니다만, 原則的으로는 아까 委員長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主務局長은 道路局長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처음에 양해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市 전체로 봐서 道路局長이나 保社環境局長 누구든지 이 일을 원만히 處理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서로 協助하고, 또 앞으로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答辯을 드리고,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建設委員會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도 專門委員 말씀대로, 우리 林東奎 委員長님과 모든 委員님께서 지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特委에서 學論이 되어서, 本會議에서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20條에 따라서 議長님이 本會議 議決로 災害特委에서 하는 것이 이번에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決定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原則적으로 執行部는 道路局이고, 議會에서는 建設委員會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所信으로서는 同感입니다만, 일을 원만히 解決하기 위한 것으로써 執行部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內容을 잘 알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 市民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道路局長과 合議해서 같이 共同으로 推進하고 있음을 報告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東奎; 또 다른 委員, 李載鎬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鎬 委員; 李載鎬 委員입니다.

우선 聖水大橋 死亡者에게 弔意를 표하면서, 이 條例를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 建設委員會에서 했지요?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建設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 李載鎬 委員; 아니, 道路局에서 했지요?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그렇습니다.
- 李載鎬 委員; 그래서 처음에 道路局으로 넘겼지요? 審査, 補償…….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建設委員會…….
- 李載鎬 委員; 建設委員會로요?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 李載鎬 委員; 했다가 안 되어서 또 우리 災害特別委員會로 했었지요, 補償審議를?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市長님께서 11月 21日 議會에 上程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道路局이 저희 執行部이기 때문에 建設委員會에서 接受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議會의 固有權限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 李載鎬 委員; 이 補償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補償은 遺族들과 合意를 하기를 議會의 條例 承認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부터 支給을 한다 이렇게 지금 合意를 해서 合意書에 각자 署名捺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된다면 12月 10日頃이 되지 않겠는가, 10日에서 15日 사이를 口頭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李載鎬 委員; 제가 알기로는 10日까지 補償을 支給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 李載鎬 委員; 그런데 이 급한 案을 하루 전에 갖고 와서 審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11月

21日 서울特別市長이 議案番號 1192號로 提出을 했습니다만 建設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야 될 것인가, 災害特委에서 審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議會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災害特委 委員님께는 條例案이 조금 늦게 직접 報告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載鎬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檢討하도록 時間的 餘裕를 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載鎬 委員; 그리고 死亡者 1人當 7,000萬원씩 준다고 遺家族들과 合意했지요?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李載鎬 委員; 그러면 死亡者는 7,000萬원씩 준다고 했는데 負傷者 있지요, 負傷者에게는 支給額의 50%, 그러니까 死亡者의 50%, 그러니까 3,500萬원씩 均一로 支給을 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꼭 이것은 負傷者가 重負傷者가 있고 輕負傷者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差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번 機會에 委員님들의 協助와 아울러 좋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死亡者는 解決이 되었습니다만 負傷者는 열일곱분이 負傷 당했는데 11명이 戰警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큰 問題가 없고 6名만 지금 현재 病院에 入院하고 있으면서 6名에 대해서 補償金,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補償金과 또 여기에도 特別慰勞金을 要求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損害

賠償金은 勞動 喪失率에 따라서 逸失收入金과 또 治療費, 療養費, 介護費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法的 基準에 따라서 支拂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合意를 봤습니다.

다만, 特別慰勞金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遺族들이 처음에는 特別慰勞金은 死亡者의 8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더니 合意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60%로 提示를 變更했습니다. 그래서 60%로 왔다가 엇그제 土曜日に 60%도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시 修正을 50%까지 해 주면 協議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런 協商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서울特別市の 基本案은 이렇습니다.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差等으로 損害賠償金을 支給받아야 될 것 아니냐, 重傷 6個月 入院期間이 있는 사람이나 1個月 入院期間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差等 支給을 하니까 그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賠償金이 決定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一律적으로 比例로 30%, 40%, 50%, 이렇게 一律적으로 比率로 決定하면 거기에 常識적으로 差等 支給이 되면서 누구든지 共感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賠償金의 一定한 比率로 저희들은 特別慰勞金을 支給하기로 서울시 方針을 決定하고, 또 그대로 協商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遺族들은 똑같이 死亡者의 50%를 계속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時間이 조금 걸리는 理由는 그분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病院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協議만 되면 病院長한테 正式的으로 入院期間을 確定해서 이대로 公告를 하고 支給을 마칠까 이

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意見이 팽팽히 맞서서 이번 週末까지 저희들이 두세 차례 더 해서 서울시 補償對策委員會에, 副市長님을 委員長으로 한 委員會에서 正式 案件으로 올려서 決定을 빠른 時日 內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李載鎬 委員님 말씀대로 死亡者의 50%를 똑같이 均일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李載鎬 委員; 저희가 그때 事故났을 적에 死亡者와 負傷者를 慰勞했을 적에 가봤더니 또 그 사람들이 自動車도 補償해 달라 이런 案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病院에 가서 患者들 診斷結果를 보면 몇 週,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豫想이요.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그렇습니다.

○李載鎬 委員; 그러면 그 診斷에 따라서 이 사람은 6個月 걸린다, A라는 사람이 6個月 걸린다면 B라는 사람은 3個月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C라는 사람은 2個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補償金을 支給해 줄 적에 差等を 분명히 둘 것이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70% 補償해 달라, 또 안 되니까 60% 해 달라, 이제는 또 50% 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뜯어내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深思熟考해서, 이 돈은 國民들이 稅金 낸 돈이니까 深思熟考해서 精確한 데이터를 뽑아서 治療費를 補償해 주기 바라며, 自動車 補償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떤 方式으로 補償하게 되는지 案이 있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國家賠償法에 의하면 逸失收入金과 또 慰藉料 및 기타 損害를 입었을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한테 損害賠償金을 請求할 수 있다, 이런 기타 條項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其他欄에 損害를 보는 것을 自動車도 損害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第1次로 損害保險, 自動車保險에 加入되어 있는 自動車는 自動車保險會社로부터 일단 被害額을 補償받고, 自動車保險會社에서 저희들한테 求償權을 行使하면 그때 關係法規에 따라 處理를 하겠습니다. 다만, 保險에 들지 않은 車輛이 한 臺가 있습니다. 그 車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바로 기타 損害賠償 請求欄에 記戰를 해서 請求를 하면 여기에 따라 關係法規에 따라서 저희들이 補償을 해 줄 그런 計劃으로 方針을 決定해 놓고 있습니다.

市民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關係法規에 따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李載鎬 委員; 그래서 정확한 판단 檢討를 해서 적절한 補償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감사합니다.

○李載鎬 委員; 이상입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東奎; 權寧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斌 委員; 여러 가지 問題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事案의 時急性과 또 우리 議會가 市民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側面에서 本委員은 지금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通過시킬 것을 動議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林東奎; 지금 權寧斌 委員님께서 原案대로 通過시킬 것을 提議를 했는데, 우선 朴光勳 委員님 質疑가 계신 모양인데 質疑를 듣고 그 問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朴光勳 委員; 朴光勳 委員입니다.

저도 市民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補償金을 어떤 方法이

되었든 빨리支給해야 된다는 데에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저는 처음부터 災害對策特別委員會에서 다룰 問題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異議를 提起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21日 書類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10日이 지난 다음에 檢討할 餘裕도 없이 本會議 하루 전에 우리 委員들한테 提出을 해서 이렇게 한 데에 異議를 提起했고, 또 이것을 建設委員會에서 다루면 本會議 決議를 거치지 않는, 이런 手順을 밟지 않아도 決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議會 決議를 얻는 手順을 밟아가면서까지 災害對策特別委員會에다 넘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異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本會議에서 決議가 되었고, 災害對策特別委員會로 指定이 되었기 때문에 本會議에서 決議한 것을 존중하는 意味에서 本 委員會에서 다루는 데에는 異議를 提起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補償審議委員會 任員 中에 幹事が 社會課長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問題에 대해서도 檢討報告書와 같이 限時條例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鐵道廳에서 무슨 事故가 났다, 鐵道事故가 났다 했을 적에도 補償關係나 이런 것을 保社局에서 擔當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疑問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權寧斌 委員 動議에 再請을 합니다.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議會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社會課長이 幹事を 道路施設課長하고 같이 共同으로 맡기로 되어 있는 것은, 委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道路局長 밑에 道路施設課長이 幹事を 맡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서

울市の 基本方針이었습니다. 다만, 道路局長과 道路施設課長이 1個月半 동안에 現場에 나가서 勤務하다 보니까 이 補償業務 內容을 熟知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 社會課長이 責任을 지는 뜻이 아니고 業務를 서로 協助해 주는 意味에서 이렇게 追加로 指定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모든 豫算執行은 道路施設課長 그리고 道路局長이 決載를 해서 執行이 되어 나가고 다만, 道路施設課長이 技術職이기 때문에 社會課長은 行政적으로 不足한 점을 補完한다는 그런 뜻으로 理解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條例에다 記入이 되어도 좋고, 또 專門委員 말씀대로 다른 때에도 社會課長이 전체 責任을 져야 되느냐,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削除를 해 줘도 무방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일은 社會課長이 분명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保社局長도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地下鐵事故가 난다든가 都市가스 事故가 난다든가 이런 問題, 또 水災가 그 뭐 自然災害는 모릅시다만 人災로 事故가 났을 때 社會課長이 항상 거기 補償責任者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林東奎; 權寧斌 委員님.

○機寧斌 委員; 本委員의 見解로는 유사한 事故가 날 수도 있고, 또 事故가 나면 항상 主務課長이나 主務部署에서 그쪽 일에 몰두하다 보면 역시 지금과 같은 그런 問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見解로는 原案대로 幹事를 두 명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 條例가 또 限時的인 것이기 때문에 별 問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林東奎; 李迎春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 委員; 죄송합니다, 이것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

동안 道路局에서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特別慰勞金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法上으로는 保健社會部에서는 災害救護基金 使用이 不可하다고 내렸고, 우리 서울시 政策會議에서는 使用이 가능하다 해서 論難이 되다가 이 條例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條例의 上位法은 무엇으로 보고 이것을 만듭니까?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제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李迎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는 災害救護基金, 災害救護法 第2條에 따라서 災害救護基金을 使用하는 것으로 政策決定에서 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시 檢討를 해 보고, 有關部署와 協議를 해본바, 이것은 自然災難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有權解釋이 나와서 一般會計 豫備費로 支出하도록 그렇게 決定을 했습니다. 그러면 一般會計 豫備費로 支出을 할 경우도 아무 根據없이 支出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法的 檢討를 有關機關과 해본 결과 地方自治法과 地方財政法, 여기에 따라서 근거를 저희들이 市議會의 條例로 하는 것이 議會 節次上, 關係法令上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參考로 執行計劃의 資料 5페이지 보시면 條例를 制定하는 根據 上位法令이 있습니다. 첫째 地方自治法 第132條,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遂行에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수가 있다, 이런 根據下에 "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및 條例가 정하는 範圍 안에서 合理的인 基準에 의하여 그 經費를 算定하여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하고 地方財政法 第30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地方自治團體의 支出의 原因이 되는 契約 기타의 行爲는

", 저희들이 特別慰勞金을支給하는 그 根據가 되겠습니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하되"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支出原因 行爲를 할 때에는 法令·조례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配定된 豫算의 範圍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地方財政法 第49條에 規定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特別慰勞金은 國家賠償法의 規定에 의해서 주지 못한 그런 特別慰勞金 性格이기 때문에 地方財政法 第49條에 의하여 上位條例 根據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李迎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東奎; 張汶龜 委員님, 質疑하실 것 없으십니까?

○張汶龜 委員; 난 나중에 와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張汶龜 委員이세요.

지금 방금 說明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向後對策에 보면 第32條에는 豫備費 支出條項 中 緊急災害 補助金은 豫備費로支給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으므로 이를 準用하여 서울市長이 우선 執行하고, 이후 議會의 豫備費 承認을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봄, 이런 內容이 있는데, 지금 本委員이 처음부터 이것은 災害가 아니고 人災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特別慰勞金을 주고 이것으로써 모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지, 特別慰勞金을 주고 또 저 사람들에게 대한 損害賠償 이런 節次에 의해서 또 支拂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疑問이 나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 좀 해 주세요.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時間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賠償金은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支給을 하고, 그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賠償金이 現實적으로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慰勞를 하는 뜻에서 特別慰勞金을 支給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損害賠償金과 또 特別慰勞金, 두 가지를 支給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張汶龜 委員; 그래서 지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事案이 被害者들한테 協助를 해 줘야된다는 당위성은 있다고 보나 法을 執行하는 市 執行部로서 變則적으로 두 번씩 支出하는 경우가, 되어서 이것이 法 節次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執行部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네, 張汶龜 委員님 말씀대로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支給을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事案에 따라서 너무나 死亡者에게 지금 高等學生인 경우에 8,000萬원 정도가 支給이 됩니다, 國家賠償法에 따라서. 그리고 一般 勤勞者는 한 4,000萬원에서 6,000萬원 정도 支給이 되고요. 이럴 때에 그분들이 서울市の 瑕疵管理로 인해서 死亡을 했기 때문에 4,000萬원 내지 8,000萬원 정도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道義的인 側面에서 그 國家賠償費가 적으니 서울特別市에서 좀 우리한테 더 주는 것이 좋다 해서 特別慰勞金을 支給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支給하는 것은 原則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이 特別慰勞金도 法務部에서 有權解釋을 받은 결과 國家賠償法에 따른 損害賠償金의 次元에서 支給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有權解釋이 있어서 돈은 두 번 支給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委員;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補償金도 줘야지요.

○委員長 林東奎;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質疑 答辯을 마친 후에 다루기로 한, 조금 전에 權寧斌 委員
께서 執行部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를 했습
니다.

여기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反對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反對가 없으면 議案番號 1192號 서울特別市聖水大橋事故에
따른死傷者補償金支給條例案이 原案대로 通過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議事棒 3打)

.....
.....

(參 照)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뒤에 실음)

.....
.....

○委員長 林東奎;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中 災害對策特別委
員會 第2次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03分 散會)

○出席委員

林東奎 權寧斌 朴光勳

李迎春 李載鎬 張汝龜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保社環境局長 卓秉伍

道路局長 金震培